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4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5.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3. 12. 18. 접수 제2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소외 D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사람이며, 피고는 D와 1982. 3.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3.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23호협92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미수금 채권 (피보전채권)

원고는 D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24차전75호로 '9,067,563원 및 그 중 559,9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3%, 8,324,413원에 대하여는 202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4. 1. 23.자 지급명령이 같은 달 26. D에게 송달되어 2024.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D의 재산 형성 경위

- 1) D는 피고와 혼인하기 이전인 1972. 12. 3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1974. 5. 17.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1974. 9. 3. 충북 음성군 F 임야 27,074㎡을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D는 1989. 6. 29. 충북 괴산군 G 도로 402㎡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3) D는 2011. 5. 16.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거래가액 113,163,000원으로 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4) 한편, D는 충북 음성군 H 도로 288㎡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1)

라. D의 이혼 및 재산처분행위

피고와 D는 2023.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23호협92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하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D는 2023.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D의 무자력 여부

가)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D의 재산 내역 및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내역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원)	피고 주장 가액(원)
적극재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15,703,000원	30,000,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8,419,000원	15,000,000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118,000,000원	제외
	충북 음성군 H 도로 288㎡	1,331,000원	6,000,000원
	충북 음성군 F 입야 27,074㎡	26,830,000원	80,000,000원
	충북 괴산군 G 도로 402㎡	387,000원	1,200,000원
합계		170,670,000	132,200,000
소극재산	채권자 원고		9,710,000원
	채권자 J은행		33,298,000원
	채권자 K카드		40,000,000원
	채권자 L조합		27,000,000원
	채권자 M카드		21,218,000원
	채권자 피고		90,000,000
합계			221,226,000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D의 적극재산은 170,67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221,226,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D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D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각 부동산(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제외함)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위 표 ‘피고 주장 가액’ 기재와 같이 132,200,000원이고 여기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시가 118,000,000원을 합하면 D의 적극재산은 250,200,000원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산분할로 N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부동산[가액 45,000,000원(= 30,000,000원 + 15,000,000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극재산 221,226,000원이 적극재산 205,200,000원(= 250,200,000원 - 45,000,000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2)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분할대상 재산

이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협약이 상당성을 잃고 과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그리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피고와 D는 혼인생활 유지 과정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D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채무도 모두 D가 부담하고 있었다.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앞서 살펴 본 사실을 종합하면, D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한 2023. 10. 23.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D 명의의 부동산 시가 합계액 170,67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D가 채무자인 221,226,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상당성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D의 혼인생활 및 혼인기간, 재산형성 과정,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및 채무 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비율은 D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25,278,000원[=(적극재산 170,670,000원 - 소극재산 221,226,000원) × 1/2]으로, 피고와 D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가 D가 부담하는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재산분할로 분담하여야 할 채무는 분담하지 않은 채, 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중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이 사건 분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총 가액 24,122,00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았는데,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전체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대한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행의사는

추정된다.

설령 D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을 250,200,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14,487,000원[=(적극재산 250,200,000원 - 소극재산 221,226,000원) × 1/2]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분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총 가액 24,122,00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았으므로, 이 역시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분할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일 뿐이고, D가 원고에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D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할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D와 이혼신고를 하기 불과 약 4개월 전인 2023. 7.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채권을 확보하고 D의 소극재산을 증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피고와 D 사이에 2023. 12. 5. 체결된 이 사건 분할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분할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3. 12. 18. 접수 제27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별지

1) D의 소유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토지가 이 법원의 음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D에 대한 과세물건지로 확인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는다.